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徐 相 穆

目 次

- I. 序 論
 - II. 貧困線의 推定
 - III. 貧困人口의 推計와 變動要因
 - IV. 貧困人口의 屬性分析
 - V. 要約 및 結論
- 附 表

I. 序 論

韓國經濟는 過去 십여년 동안 年平均 10%의 급격한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1人當 國民所得도 1962年의 美貨 209弗에서 1978년에는 美貨 713弗¹⁾로 增加하였다. 일반적으로 經濟의 全般的 所得水準이 향상되면서 所得不均等이나 貧困에 대한 社會의 관심은 점차 增加하는 傾向이 있다. 貧困에 관한 研究가 後進國에서 보다 오히려 先進國에서 더 활발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나타낸다 하겠다.

더우기, 貧困打開을 위한 社會福祉政策의 樹立에 필요한 經濟的 부담을 감당하려면 國家의 經濟力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해야 될 것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貧困은 韓國에서 점차 중요한 政策的 課題로 대두되리라 생각된다.

政府는 社會開發을 第4次 五個年計劃의 主要政策目標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새로운 社會保障事業도 추진하고 있다. 醫療保險과 醫療保護制度가 1977年初부터 시행되었으며 國民福祉年金制度도 1980년부터 실시되리라 한다. 既存 公的扶助事業은 물론 새로 실시될 社會保險事業의 主專澤者가 低所得層이므로 社會保障事業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貧困層에 대한 좀 더 集中的 研究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제까지 韓國에서 貧困에 관한 研究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保健社會部에서 公的扶助事業을 위한 行政統計로 貧困人口를 推計하고 있고 勞動組合, 勞動廳, 保健社會部에서 각기 最低生計費를 推計한 例는 있었으나²⁾ 貧困에 관한 體系的인 研究는 거의 없었다.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1975年 不變價格

2) 本稿 II章 3 참조.

따라서 本研究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존통계자료의 綜合的 分析을 통하여 貧困線을 推定하고 貧困의 深度를 파악한다.

(2) 貧困人口 및 家口の 社會·經濟的 屬性을 파악함으로써 貧困層의 社會福祉에 영향을 주는 主要因을 糾明한다³⁾.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II章에서는 여러가지 貧困概念의 妥當性을 검토한 후 1973年을 기준으로 最低飮食物費를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어 推計한다. 이를 토대로 貧困線을 推定하고 品目別 物價指數를 사용하여 年度別 貧困線을 구한다. 위에서 推定된 貧困線에 의거하여 III章에서는 基準年度인 1965, 70, 76年의 貧困人口와 家口比率를 推計하고, 貧困의 深度를 나타내는 貧困係數(poverty index)를 算出하여, 1965~76年間 貧困深度의 變化要因도 아울러 분석한다. IV章에서는 貧困層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社會福祉에 영향을 주는 要因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V章에서는 本稿의 分析結果를 요약하고 이의 政策的 함축성도 아울러 제시한다.

II. 貧困線의 推定

1. 貧困의 定義

貧困線이란 個人이나 家口를 貧困과 非貧困으로 나누는 分界線을 의미한다. 따라서 貧困

線의 推定은 貧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貧困은 生計에 필요한 所得의 缺如로 定義할 수 있다. 이는 貧困을 經濟的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또한 貧困은 經濟的 變數以外에도 社會的(또는 心理的) 變數로 표현할 수 있다. 近來에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社會指標⁴⁾가 이의 一例라 하겠다. 그러나 貧困의 經濟的 特性은 非經濟的 特性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貧困을 定義하는데 있어 經濟的 側面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貧困層의 特性을 규명할 때는 非經濟的 特性도 아울러 분석하기로 한다.

經濟的 面에서도 貧困은 相對貧困과 絕對貧困의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前者의 概念에 의하면 貧困은 特定한 社會의 既存生活水準에 比例하여 결정된다. 相對貧困을 推定하는 한 방법으로 所得順으로 全體의 一定比率(예를 들어 20%)을 貧困層으로 定義할 수 있다. 이를 純粹相對貧困係數(purely relative measure of poverty)라 부르는데 이에 의하면 언제나 一定比率의 貧困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政策樹立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의 係數를 약간 변형하여 얻어진 類似相對貧困係數(quasi-relative measure of poverty)는 貧困線을 全體平均所得의 一定比率(예를 들어 1/3)로 정의한다. 이에 의하면 貧困層의 比率는 所得水準에는 관계없이 所得分布의 函數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定義된 相對貧困은 흔히 일반의 많은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類似相對貧困係數도 부수적으로 推計하였다.

本稿의 分析에 基本을 이루는 絕對貧困概念에 의하면, 우선 一家口가 最低의 생활을 유

3) 本稿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貧困打開을 위한 政策的 課題에 관한 研究도 著者が 아울러 推進中에 있다.

4) 社會指標는 經濟的 指標도 포함한다.

지하는데 필요한 生計費를 推計한 후, 家口의 所得이 推計된 最低生計費에 未達하였을 경우를 貧困家口라 정의한다. 이의 첫 단계로 最低生活에 필요한 財貨와 用役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最低生活이 얼마나 하는 주관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체로 特定社會의 既存生活水準이 最低生活을 定義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絕對貧困의 概念 역시 社會의 全般的 生活水準과 높은 相關關係를 갖게 된다.

最低生活에 필요한 生計費를 推計하는 데에도 低所得層의 實際消費形態에 의거하는 방법과 理論적으로 最低生計費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後者の 방법을 사용하는데 問題點은 人間의 基本的 欲求를 定義할 수 있는 客觀的 基準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 생활에 필요한 營養勸奨量은 求할 수 있어도 권장된 營養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食物 消費構造의 선택은 매우 任意的이기 때문이다. 음식물 이외의 消費에 대해서는 基本的 欲求의 基準마저 정하기 힘들다.

本稿에서는 위의 두가지 방법을 折衷하여 다음과 같이 最低生計費를 推計한다. 우선 人間의 가장 基本的인 欲求를 正常的 活動에 必要한 熱量의 섭취라고 보고 家口員構成別 必要熱量을 구한다. 低所得層의 實際食物消費構造에 의거하여 이에 필요한 食物量과 食物費를 推計한다. 음식물 이외의 必要生計費도 實際 消費形態分析에 의거하여 推計된 最低食物費에 相應하는 水準을 구한다.

2. 最低生計費(1973年)

食事は 人間의 가장 基本的 欲求이기 때문

에 貧困線을 推定하는 첫 단계로 最低食物費를 推計하였다. 推計方法은 다음과 같다. 즉, (1) 人口「센서스」(census)를 참조하여 標準家口를 선정한다. (2) 選定된 標準家口의 家口員들의 正常的인 活動에 필요한 熱量을 推計한다. (3) 低所得家口의 實際 食物消費構造를 근거로 위에서 推計된 熱量의 섭취에 필요한 食物量을 推計한다. (4) 이에 필요한 食物費를 都市家口와 農村家口로 나누어 推計한다.

經濟企劃院 統計局에서 실시한 1975年 人口「센서스」에 의하면 家口의 크기는 平均적으로 5이며 5人家口의 約 70%는 夫婦과 子女 셋으로 構成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標準家口의 構成을 <表 1>에 요약된 바와 같이 成人 男 1人, 成人 女 1人, 大兒 1人, 小兒 2人으로 정한다. 標準家口를 선정하는 이유는 家口員 構成이 변함에 따라 最低食物費와 貧困線을 따로 推計하는 複雜을 피하기 위해서다.

標準家口의 構成을 實際와 類似하게 함으로써 家口員 構成의 차이에서 오는 貧困線 推計上的 偏倚는 많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標準家口의 1人1日 平均 必要熱量은 2,100kcal, 必要蛋白質은 63g으로 推計되었다. 이는 1976年

<表 1> 標準家口의 構成과 必要熱量

	年 齡	體 重 (kg)	1人1日當 必要熱量 ¹⁾ (kcal)	1人1日當 必要蛋白質 ¹⁾ (g)
男	20~49	60	2,700	80
女	20~49	52	2,000	70
男	10~12	32	2,300	65
小 兒	7~9	25	2,000	55
小 兒	4~6	17	1,500	45
1人當 均			2,100	63

註: 1) FAO 韓國協會(1977).

實際消費⁵⁾ 熱量 2,414kcal, 蛋白質 74g보다 낮다.

營養學者에 의해 권장된 食品表에 해당하는 飲食物費는 飲食物의 구성이 고급이어서 일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開發途上國에서 最低生計費 算出에 이용하기에는 不適合하다. 本稿에서는 保健社會部에서 低所得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한 國民生活實態調査에 나타난 實際 飲食物消費形態에 의거하여 最低生計費를 推計하였다. 國民生活實態調査는 1973年 8월에 全國的으로 5,030家口를 대상으로 1次調査를 실시하고 그 結果에 의거하여 2次調査의 對象인 “低所得家口”로 아래 項目中 하나에 해당하는 1,162家口를 선정하였다. 즉, (1) 1973年 7月 總所得 24,000원 미만인 家口, (2) 單純勞務者와 不完全就業者, (3) 耕作地 5단보 미만인 農家, (4) 公的 扶助를 받는 生保對象家口⁶⁾. 위에서 선정된 低所得家口에 대해 家計所得, 支出, 家計構成, 住宅狀態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해 9월에 집중 조사하였다.

國民生活實態調査의 結果에 의거하여 低所得家口의 37個 品目別 平均飲食物費를 都市와 農村으로 구분하여 각각 小賣價格으로 나누어서 品目別 平均飲食物 消費量을 推定하였다. 都市와 農村을 나누어 처리한 이유는 價格面에서 이 두 地域間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⁷⁾. 攝取熱量과 營養分을 일치시키기 위해 都市와 農村의 飲食物消費量의 平均을 구하여 品目別 飲食物消費量이 都市와 農村이 같다고 간주하였다.

FAO 韓國協會의 韓國人營養勸奨量(1975)에 의거하여 위에서 推定된 飲食物 消費量을 消費熱量(kcal)으로 환산하였다. 이리하여 推計된 1人 1日當 總열량인 1,952kcal로 標準家口 必要熱量인 2,100kcal 미만이므로 各品目別 飲食物 消費量을 7.6% 증가시켜 總消費熱량이 1人 1日當 2,100kcal 가 되도록 修正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推計된 飲食物消費量을 小賣價格으로 곱하여 1人 1日 飲食物費를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어 推計하였다. 그 結果는

〈表 2〉 1人 1日 最低飲食物費 推計(1973年)

	消費量 (g)	攝取熱量 (kcal)	飲食物費(원)		攝 取 蛋 白 質 (g)
			都 市	農 村	
곡 물	559.3	1,895.6	61.36	54.60	48.06
육 류·유 란	5.9	7.4	3.24	2.98	1.02
어 류·해 소	19.9	19.0	3.76	2.30	2.86
채소·감자류	334.6	90.3	12.80	7.81	4.83
과 일	10.4	4.7	1.53	0.81	0.03
조 미 료	37.4	30.5	7.06	6.36	0.85
가 공 식 품	17.8	52.5	1.52	1.65	1.71
합 계	985.3	2,100.0	91.27	76.51	59.36

註:〈附表 1〉 참조.

5) 農水産部, FAO 韓國協會, 『1976年度 食品需給表』.

6) 1973年 調査와 類似한 方法으로 保健社會部에서 1978年 8월에 1차 조사를, 10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그 結果를 분석중에 있다.

7) 都市小賣物價는 統計局資料이고 農村小賣物價는 農業協同組合資料를 사용하였다.

〈表 2〉에 요약되었다⁸⁾.

1인 1일 飲食物消費量은 985g으로 그中 곡물과 채소·감자류가 各各 전체의 57%, 34%로 가장 중요하다. 攝取熱量으로는 역시 곡물이 전체의 90%로 가장 높으며 攝取蛋白質面에서는 곡물(81%), 채소·감자류(8%), 어류(5%), 육류(2%)의 順으로 되어 있다. 1973年 1人 1日 飲食物費는 都市地域이 91원인데, 農村地域은 77원으로 都市보다 약 20% 정도 낮다. 그 이유는 加工食品을 제외한 모든 食品의 價格이 都市보다 農村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특기할 점은 本稿에서 推計된 最低飲食物費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1人 1日 59g으로 標準家口의 家口員當 必要量 63g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백질 부족량이 별로 많지않고 일반적으로 最低飲食物費를 推定할 때 熱量만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推定結果를 재조정하지 않았다. 本研究의 목적이 最低生計費의 推計라는 점을 감안하여 食品의 可食部分은 100% 섭취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조리나 보관시 食品 손상은 무시하였다.

本稿에서 사용된 最低生計費의 推計方法은 다음과 같다. 家計費를 飲食物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⁹⁾의 5個品目으로 나누어 都市家口와 農村家口의 「엔겔」(Engel) 曲線을 統計的 方法에 의해 推定하였다. 위의 推定結果를 利用하여 앞에서 推計된 最低飲食物費에 相當하는 家計所得을 逆算하였다. 위의 家計所得에 相當하는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를 推定된 「엔겔」函數에 의거하여 구하였다. 이리하여 얻어진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에 最低飲食物費를 더하여 最低生計費가 推計되었다.

〈表 3〉 最低生計費推計(1973年)

	都 市 家 口			農 村 家 口		
	$\frac{C_i}{N} = \alpha + \beta \frac{Y}{N}$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ln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frac{C_i}{N} = \alpha + \beta \frac{Y}{N}$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ln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1人 1月(원)						
飲食物費	2,738	2,738	2,738	2,295	2,295	2,295
住居費	681	705	683	320	320	299
光熱費	262	264	261	331	332	331
被服費	379	379	342	342	343	343
雜費	543	547	516	588	589	584
合 計	4,603	4,633	4,540	3,876	3,879	3,852
構成費(%)						
飲食物費	59.5	59.1	60.3	59.2	59.2	59.6
住居費	14.8	15.4	15.0	8.3	8.2	7.8
光熱費	5.7	5.7	5.7	8.5	8.6	8.6
被服費	8.2	8.2	7.5	8.8	8.8	8.9
雜費	11.8	11.8	11.4	15.2	15.2	15.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 本稿에서는 飲食物費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國民生活實態調查의 資料가 年平均이 아니고 9月 한달 平均值인데서 오는 季節變動上의 偏倚는 별로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9) 本稿의 目的이 最低生計費의 推計라는 點을 고려하여 잡비에는 교육비, 의료비, 交通·통신비만을 포함시켰다.

「엥겔」曲線의 推定에 사용된 函數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frac{C_i}{N} = \alpha + \beta \frac{Y}{N} \dots\dots\dots(1)$$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dots\dots\dots(2)$$

$$\ln \frac{C_i}{N} = \alpha + \beta \ln \frac{Y}{N} \dots\dots\dots(3)$$

C_i = 品目別 消費支出(음식물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Y = 可處分所得

N = 家口當 家口員數

α, β = 推定係數

統計資料로는 都市의 경우 調査統計局의 都市家計調査, 農村의 경우 農水産部の 農家經濟調査에 나타난 1963~77年間 年平均 時系列資料를 1973年 不變價格으로 수정하여 이용하였다(推計結果는 附表 2에 要約되어 있다).

推定된 「엥겔」函數에 의하여 얻어진 品目別 最低生計費는 <表 3>에 요약되어 있다. 式(1)의 函數를 사용하면 1人當 月最低生計費(1973年 기준)가 都市家口는 4,603원, 農村家口는 3,876원이고 式(2)에 의하면 都市家口는 4,633원, 農村家口는 3,879원이며 式(3)에 의하면 都市家口는 4,540원, 農村家口는 3,852원으로 어떤 函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推計된 最低生計費가 약간 달라진다. 式(1)은 限界消費性向이 不變이고 式(3)은 所得彈力性이 不變이나 式(2)는 限界消費性向과 所得彈力性

이 所得의 逆關係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셋중에서 가장 現實的이라고 생각되어 式(2)의 結果를 本稿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品目別 構成費는 都市의 경우 飲食物費 59%, 住居費 15%, 光熱費 6%, 被服費 8%, 雜費 12%이고 農村은 飲食物費 59%, 住居費 8%, 光熱費 9%, 被服費 9%, 雜費 15%이다. 都市의 最低生計費가 農村보다 19% 높게 推計되었다. 앞에서 推計된 飲食物費의 都市와 農村의 차이와 같다. 住居費에는 都市家口가 農村家口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나 光熱費와 雜費는 農村家口가 오히려 약간 높게 推計되었다.

위에서 推計된 1973年度 기준 最低生計費를 韓國銀行에서 推定된 民間消費支出 5個品目(飲食物費, 住居費, 光熱費, 被服費, 雜費)別 「디플레이터」(deflator)를 사용하여 年度別 最低生計費를 推計하였고¹⁰⁾ 그 結果는 <表 4>에 요약되어 있다. 物價上昇으로 인한 最低生計費의 增加率은 1965~73年間に 13%이었으나 1973~78年間에는 23%로 높아졌다¹¹⁾.

<表 4> 年度別最低生計費

	1人 1月 (원)		1973=100.0		都市 農村
	都 市	農 村	都 市	農 村	
1965	1,720	1,441	37.1	37.1	1.194
1966	1,959	1,461	42.3	42.3	1.194
1967	2,256	1,876	48.7	48.4	1.203
1968	2,486	2,070	53.7	53.4	1.201
1969	2,807	2,348	60.6	60.5	1.195
1970	3,233	2,714	69.8	70.0	1.191
1971	3,715	3,104	80.2	80.0	1.197
1972	4,241	3,547	91.5	91.4	1.196
1973	4,633	3,879	100.0	100.0	1.194
1974	6,305	5,273	136.1	135.9	1.196
1975	8,030	6,738	173.3	173.7	1.192
1976	9,432	7,890	203.6	203.4	1.195
1977	10,774	9,015	232.5	232.4	1.195
1978	12,930	10,853	279.1	279.8	1.191

10) 도시가계의 경우 조사통계국의 도시소비자 물가지수, 농가의 경우 農協의 농가판매·구매 品目別 物價指數를 사용하려 했으나 1970年代에 들어서 두指數 사이의 격차가 심하여 本稿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물가상승율이 같다고 간주하고 國民所得 推計에 쓰여진 民間消費支出의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11) 年度別 最低生計費를 推計하는데 있어 本稿에서는 最低生計費의 品目構成이 不變이라 假定함으로써 相對

이제까지 最低生計費는 편의상 5인으로 구성된 標準家口를 기준으로 推計하였다. 다음으로는, 家口員의 構成과 數가 變함에 따라 最低生計費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消費者經濟學(consumer economics)에서 많은 論議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 本稿에서는 家口員構成이 標準家口와 다른 경우는 무시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標準家口의 家口員構成이 實際 統計資料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家口員構成의 차이에서 오는 偏倚가 많이 제거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¹²⁾ 有意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家口員數의 變化로 인한 最低生計費의 變化를 推計하기 위해 다음의 函數를 1973年 家計調査를 이용하여 統計적으로 推定하여 보았다.

$$C_i = \alpha + \beta Y + \sum_j r_j D_j; \dots\dots\dots(4)$$

$D_j = 1$, 家口員數가 j 인일 경우

0,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나 推定結果가 좋지 않아¹³⁾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캐나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貧困線推計에 사용하는 자료를 本稿에서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表 6>에 요약되었다. 5人家口의 生計費를 100으로 보았

을 때 2人家口의 生計費는 59, 7人家口는 120으로 나타나 家口員數가 증가함에 따라 生計費의 증가는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때문에 相對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인다.

<表 5> 家口員數別 最低生計費 推計(1973年)

家口員數 (人)	指 數 ¹⁾ (5人家口 =100)	月家口當最低生計費(원)	
		都 市	農 村
1	41	9,438	7,952
2	59	13,667	11,443
3	75	17,374	14,546
4	89	20,617	17,762
5	100	23,165	19,395
6	110	25,482	21,335
7	120	27,798	23,274
8	130	30,115	25,214
9	140	32,421	27,153
10	150	34,748	29,093

註: 1) Statistics Canada (1973).

3. 既存資料와의 比較

本稿에서 推計된 最低生推費를 이제까지 韓國에서 시도된 다른 推計結果와 비교해 보기로 한다. 最低生計費는 最低賃金 推計의 基本資料로 사용할 수 있다. 韓國에서는 최초로 1969년에 全國纖維勞動組合에서 最低生計費를 推計하였다¹⁴⁾. 5人家구의 月最低生計費는 1969년에 19,772원으로 本稿의 推計(1969년에 都市 14,035원, 農村 11,745원)보다 높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에서 推計한 2人家구의 1977年 月最低生計費는¹⁵⁾ 76,715원으로 本稿의 推計(1977년에 都市 31,783원, 農村 26,594원)보다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 勞動廳에서는 月 30,000원을 1978年 最低賃金 指導基準으로 사용하였는데¹⁶⁾ 이는 本稿에서 推計된 1人 最低生計費(1978년에 都市 26,506원, 農村 22,249

價格의 變化에서 오는 消費構造 變化는 無視하였다. 絕對貧困의 개념도 특정한 시기와 社會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最低生計費를 推計하는데 사용되는 기준년도는 수시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本稿에서의 分析기간이 1965~76年間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국민생활 실태조사가 실시된 그 중간년도인 1973年을 기준년도로 정하였다.

12) Kwang Suk Kim and Dai Young Kim(1975).
 13) 推定된 r_j 係數中 몇 가지가 負의 數值로 나왔다.
 14) 器目別 理論의 最低生計費를 推計하였다.
 15) 品目別 理論 最低生計費
 16) 산출 근거는 분명치 않음.

원)보다 약간 높다.

最低生計費는 政府의 各種 公的扶助事業의 惠澤基準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國民生活實態調查 결과에 의거하여 保健社會部(社會保障審議委員會)에서 推計한 5人家口의 月最低生計費¹⁷⁾는 1973년에 21,740원으로 本稿의 推計(1973년에 都市 23,165원, 農村 19,395원)와 비슷하다. 保健社會部에서 1977년에 生活保護對象家口 선정에 사용된 家口所得基準은 都市 8,000원, 農村 7,000원¹⁸⁾으로 本稿에서 推計된 5人家口의 1人當 月最低生計費(1977년에 都市 10,774원, 農村 9,015원)보다 훨씬 낮다. 마지막으로 最低生計費는 所得稅의 免稅基準으로 사용할 수 있다. 國稅廳에서 사용한 1978年 所得稅 免稅基準은 5人家口의 경우 月所得 100,000원으로¹⁹⁾ 本稿의 推計(1978년에 都市 64,650원, 農村 54,265원)보다 훨씬 높다.

Ⅲ. 貧困人口의 推計와 變動要因

1. 貧困人口와 貧困係數

貧困線미만에 속하는 貧困人口를 推計하기 위해서는 所得分布에 관한 신뢰성이 있는 統計資料가 필요하다. 本稿에서는 既存資料의 결함을 보완하여 얻은 朱鶴中博士²⁰⁾의 所得分布推計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推計의 平均家計所得이 國民所得統計資料보다 낮게 나왔다. 그 이유는 所得推計에 주로 사용된 家計調查와 國稅廳의 所得稅 자료는 대체로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家計平均所得을 國民所得統計의 個人

〈表 6〉 貧困家口와 人口의 推計

	貧困家口 (千家口)	貧困人口 (千名)	分 布(%)		貧 困 率(%)	
			貧困人口	貧困人口	貧困家口 全 家 口	貧困人口 全 人 口
1965年						
都 市	783	4,244	39.1	36.1	54.9	54.9
農 村	1,223	7,505	60.9	63.9	35.8	35.8
全 國	2,006	11,749	100.0	100.0	41.4	40.9
1970年						
都 市	382	2,006	28.1	26.6	16.2	16.2
農 村	978	5,548	71.9	73.4	27.9	27.9
全 國	1,360	7,554	100.0	100.0	23.2	23.4
1976年						
都 市	610	3,072	61.0	59.1	18.1	18.1
農 村	390	2,126	39.0	40.9	11.7	11.7
全 國	1,000	5,198	100.0	100.0	14.6	14.8

17) 推計方法은 本稿와 유사함.

18) 산출근거는 분명치 않음.

19) 산출근거는 분명치 않음.

20) 朱鶴中(1979)

可處分所得과 같게 하기 위해 各家口의 所得을 1965년에는 31.9%, 1970년에는 8.3%, 1976년에는 12.1%씩 높게 調整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위의 所得分配 資料는 家口를 單位로 家口員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既存家計調査에 나타난 平均家口員數를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어 貧困人口를 推計하였다. 따라서 所得階層別 家口員數는 동일하다고 간주하였다.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고 基準年度인 1965年, 1970年, 1976年에 貧困線 미만에 속하는 家口와 人口를 推計하였다. 그 결과는 <表 6>에 나타나 있듯이 貧困人口가 全國적으로 1965년에 11.7百萬에서 1970년에는 7.6百萬, 1976년에는 5.2百萬으로 減少하였다. 貧困人口比率(貧困人口/全人口)은 1965년에 41%에서 1970년에는 23%, 1976년에는 15%로 급격한 減少를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는 都市地域의 貧困人口比率이 1965~70年間に 55%에서 16%로 급격히 減少하였으나 그 후에는 다시 높아져 1976년에는 18

%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반면에 農村地域에서는 貧困人口比率이 1965년에 36%에서 계속 減少해서 1970년에 28%, 1976년에는 12%로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貧困人口의 地域別 分布도 매우 달라져 1965년에는 貧困人口의 64%가 農村에 있었으나 1976년에는 貧困人口의 59%가 都市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推計된 貧困人口比率(incidence of poverty 또는 head count ratio)의 推計에는 貧困線과 貧困人口의 平均所得間의 격차는 무시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貧困隔差(poverty gap)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text{貧困隔差} = \{(\text{貧困線}) - \text{貧困人口平均所得}\} \times (\text{貧困人口數})$$

다시 말해서 貧困隔差는 貧困人口를 貧困線으로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總金額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리하여 구해진 貧困隔差를 GNP나 政府總支出의 比率로 나타낼 수 있다. <表 7>에 의하면 1965년에는 貧困隔差가 相對的으

<表 7> 貧困係數 推計

	1人 1月		貧困隔差 ¹⁾ (10億원)	貧困隔差 G N P (%)	貧困隔差 政府支出 (%)	「센」의 貧困係數	相 對 貧 困 對 線 (1人1月) (원)	相 對 貧 困 人 口 比 率 (%)
	絶 對 貧 困 線 ¹⁾ (원)	貧 困 人 口 平 均 所 得 ¹⁾ (원)						
1965年								
都市	1,720	940	39.7	4.9	42.5	0.2490	771	17.9
農村	1,441	1,004	39.4	4.9	42.1	0.1085	607	10.0
全國	1,542	981	79.1	9.8	84.6	0.1489	651	12.2
1970年								
都市	3,233	2,350	21.3	0.8	4.8	0.0443	2,305	7.0
農村	2,714	2,002	39.5	1.5	9.0	0.0733	1,431	3.4
全國	2,852	2,094	60.8	2.3	13.8	0.0623	1,766	4.8
1976年								
都市	9,432	5,645	139.6	1.1	6.4	0.0728	7,947	15.5
農村	7,890	4,697	81.4	0.7	3.8	0.0472	6,657	8.9
全國	8,801	5,257	221.0	1.8	10.2	0.0595	7,266	12.0

註 : 1) 經常價格

로 매우 높아 GNP의 9.8%, 政府總支出의 84.6%를 차지하였다. 그후 貧困隔差는 相對的으로 점차 감소하여 1976년에는 GNP의 1.8%, 政府總支出의 10.2%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간의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貧困層이 많이 減少하였기 때문에 貧困打開을 위한 政府의 財政的 直接介入도 점차적으로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하겠다.

貧困人口比率(incidence of poverty)이나 貧困隔差(poverty gap)는 貧困人口間의 所得分布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點을 補完하여 貧困을 係數化한 것이 「센」의 貧困係數(Sen's poverty index)²¹⁾이다. 「센」의 貧困係數는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P = \frac{q}{N} \cdot \frac{1}{Z} [Z - V(1-G)] \dots\dots\dots(5)$$

- q = 貧困人口
- N = 總人口
- Z = 貧困線
- V = 貧困人口 平均所得
- G = 貧困人口間의 所得不均等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 係數

本稿에서 사용한 資料는 貧困線미만에 속하는 所得階層數가 적기 때문에 G의 推計는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貧困人口의 所得은 모두 같다고 간주하고 다음의 식을 사용하였다.

$$P = \frac{q}{N} \cdot \frac{1}{Z} (Z - V) \dots\dots\dots(6)$$

1965년에 「센」의 係數는 0.149이었으나 1970년에는 貧困人口比率의 減少와 貧困人口平均所得의 相對的 증대로 훨씬 낮은 0.062를 나타냈다. 1976년에는 貧困人口比率은 크게 줄었으나 貧困人口 平均所得이 相對的으로 減少하여 「센」의 貧困係數는 1970年보다 약간 낮은 0.060으로 推計되었다. 1970~76年間에는 貧困人口의 平均所得이 相對的으로 減少했다는 點에서 農村과 都市가 같으나 農村지역에서는 貧困人口比率의 急激한 減少로 貧困係數는 1970年의 0.073에서 1976년에는 0.043으로 減少하였다. 그러나 都市地域에서는 이 期間中 貧困人口比率도 약간 增加하였고 貧困人口 平均所得의 相對的 減少로 貧困係數는 1970年의 0.047에서 1976년에는 0.073으로 크게 增加하였다.

이제까지 貧困을 絕對的 概念에 의해 分析하였다. 다음에는 比較를 목적으로 相對貧困線을 全國 1人當 平均所得의 1/3로 定義하여 보았다. 相對貧困人口比率(incidence of relative poverty)은 全國的으로 1965년에 12.2%에서 1970년에는 4.8%로 減少하였다. 이는 全般的 所得不均等도가 이 期間에 減少하였기 때문이다²²⁾. 1970~76年間에는 所得不均等도의 全般的인 增加로 相對貧困比率은 1976년에 12.0%로 높아졌다. 앞에서 推計한 絕對貧困比率과 比較해 보면 相對貧困比率이 훨씬 낮다. 이는 分析期間中(1965~76年)에는 絕對貧困이 韓國에서 더 緊急한 政策課題이었음을 의미한다²³⁾.

2. 變動要因

앞에서 가장 注目할 만한 결과는 絕對貧困

21) A.K. Sen, "Poverty: An Ordinal Approach to Measurement" *Econometrica*, Vol.44, No.2, March 1976.

22) 朱鶴中博士의 推計(1979)에 의하면 全國的 分布의 「지니」係數는 1965년에 0.344, 1970년에 0.332, 1976년에는 0.391로 나타났다.

23) 그러나 絕對貧困比率은 점차 減少되겠지만 相對貧困比率은 近來의 추세로 보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人口의 比率이 1965~76年間に 크게 減少하였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重要한 要因은 이 期間中 勞動集約的 輸出産業의 急激한 成長으로 就業機會와 全般的 家計所得이 增加하여 많은 人口가 貧困線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1965~76年間 1人當 GNP는 不變價格으로 年平均 8.7% 增加하였다. 또한 失業率은 이 期間中 9.4%에서 3.9%로, 不完全 就業率²⁴⁾도 7.3%에서 1.7%로 減少하였다. 이는 1960年 초반의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就業機會의 增大를 隨伴하는 高度經濟成長政策이 貧困打開을 위해 매우 効果적임을 나타낸다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1965~70年과 1970~76年의 두 期間을 比較할 때 全般的 經濟成長率은 거의 같아도 貧困係數上에 나타난 貧困深度의 減少率은 後者가 前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의 한 要因으로는 貧困 人口比率이 점차 減少함에 따라 經濟成長의 直接的 혜택을 받지 못하는 階層(예를 들어 不具, 老齡等으로 就業을 할 수 없는 人口)의 比重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要因으로는 1965~70년에 비해 1970~76년에는 生産 過程에서 資本 및 技術集約度의 增加로 全般的 所得分布가 不均等해졌다는 사실이다. 이 期間中 上位 20% 所得階層의 所得은 年平均 24%(經常價格) 增加한 데 반해 下位 20% 所得階層의 所得은 年平均 17%밖에 增加하지 않았다²⁵⁾.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1970~76年間に 都市地域의 貧困人口가 增加하였다는 것이다.

그 要因은 이 期間中 都市人口의 增加率이 높았다는데 있다. 都市人口는 1970년에 全人口의 41%를 차지하였으나 1976년에는 全人口의 約 50%를 차지하였다. 새로 都市에 移住한 人口中 대부분이 農村에서 低所得層에 속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期間中 農村에서 貧困人口의 減少는 都市에서 貧困人口의 增加를 의미했다고도 할 수 있다. 여하튼 近來에 들어 貧困人口의 減少率의 鈍化는 高度經濟成長政策만으로 貧困問題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示唆한다 하겠다.

Ⅳ. 貧困家口의 屬性分析

貧困家口의 社會·經濟的 특징을 糾明하기 위한 統計資料는 매우 未備하다. 本稿에서는 國民生活實態調查, 國民營養調查, 特別雇傭統計調查等 既存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貧困家口의 主要特性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分析했다.

1. 生活狀態

生活의 基本을 이루는 飲食物 消費面에서 貧困家口의 特性을 살펴보았다. 國民生活實態調查(1973年)에 나타난 貧困家口의 平均攝取 熱量은 1人 1日 都市家口가 1,850kcal, 農村家口가 2,040kcal로 標準家口의 必要熱量 2,100kcal보다 약간 낮다. 攝取蛋白質은 都市家口가 1人 1日 51g, 農村家口가 59g으로 標準家口 必要量 63g보다 낮다. 特記할 점은 農村家口가 都市家口에 비해 飲食物費는 적게 들어도 飲食物消費量은 물론 攝取熱量·蛋白質이

24) 편의상 適當 18시간 미만 就業으로 定義함.

25) 1965~70年間의 所得增加率은 上位 20% 所得階層이 年平均 27%이고 下位 20% 所得階層이 年平均 33%이었다.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農村地域의 飲食物價格이 낮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平均적으로 貧困家口의 熱量과 蛋白質消費量이 必要量에 크게 미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韓國에서의 貧困層이 飲食物消費面에서 다른 後進國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은 總生計費中 飲食物費의 比重(「엔겔」係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라운트리」²⁶⁾는 「엔겔」係數 60%를 一次貧困線이라 불렀고 이 數値는 開發途上國에서 貧困線을 推定하는 基準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73年 國民生活 實態調査에 나타난 貧困家口의 「엔겔」係數는 56%로 비교적 낮다. 그 後에도 「엔겔」係數는 점차 減少하여 1977年 都市家計調査 標本家口의 약 20%를 차지하는 家口所得 50,000원 미만인 家口의 「엔겔」係數는 51%, 農家經濟調査 標本家口의 약 25%를 차지하는 耕作지 0.5정보 미만 農家의 「엔겔」係數는 52%였다.

그러나 個別的 家口로 보면 必要熱量에 크게 미달하는 家口가 있을 것이고 또한 熱量以外的 必要營養攝取面에서 많은 家口가 매우 미흡한 狀態인 것 같다. 保健社會部의 1977年 國民營養調査에 의하면 平均적으로 熱量과 蛋白質攝取는 권장량보다 크게 뒤지지 않으나 칼슘, 비타민類의 섭취는 권장량보다 훨씬 부족하므로 나타났다²⁷⁾. 더우기 調査人口의

30%가 營養障礙 有症候者²⁸⁾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家口所得과 營養障礙 有症候率과는 높은 負의 相關關係가 있을 것을 생각할 때 貧困家口中 營養障礙 有症候者는 매우 높을 것이다²⁹⁾.

〈表 8〉 住宅狀態別 分布(%)

	貧困家口		全國平均	
	都市	農村	都市	農村
1. 所有形態	100.0	100.0	100.0	100.0
自家	39.0	89.7	83.4	94.0
傳貰	32.0	0.5	10.5	1.4
月貰	26.7	6.2	4.1	1.3
기타	2.3	3.6	2.0	3.3
2. 使用房數	100.0	100.0	100.0	100.0
1	73.6	14.9	6.2	5.1
2	23.1	55.9	21.7	36.9
3	2.7	25.1	28.5	36.9
4	0.6	3.6	22.9	14.8
5以上	—	0.5	20.7	6.3

資料 : 1973年 『國民生活實態調査報告書』.
1975年 『總人口 및 住宅調査』.

貧困家口의 대부분이 住宅面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國民生活實態調査(1973年)에 의하면 都市地域에서 貧困家口의 自家所有率은 39%로 全國平均(1975년에 83%)보다 훨씬 낮다. 都市貧困家口의 약 60%가 傳貰나 月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중 37%는 月貰房에 살고 있다. 農村地域의 貧困家口 住宅所有率은 90%로 都市보다는 높으나 全國平均에는 약간 미달한다. 사용하는 房數別 分布를 보면 都市에서는 貧困家口의 74%가 한방에 살고 있고 農村에서는 70%가 두방 미만에 居住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就業狀態

貧困家口의 經濟活動狀態나 就業狀態는 貧

26) B.S., Rowntree (1922).

27) 1977年 國民營養調査는 全國적으로 1,200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調査에 나타난 실제 소비량과 권장량의 比率는 열량 99%, 단백질 105%, 칼슘 97%, 철분 140%, 비타민 A 70%, 비타민 B₁ 70%, 비타민 B₂ 50%, 나이아신 90%, 비타민 C 76%이다.

28) 營養障礙有症候者는 다음의 症勢중 하나를 가진 者이다. 즉, 貧血, 甲狀腺肥大症, 비뚤점, 口角炎, 夜盲症, 舌炎, 口脣炎, 角化症, 腓腹筋壓痛, 壞血性齒肉, 膝蓋反射소실, 浮腫.

29) 國民營養調査의 결과가 所得階層別로 分類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推計하지 못하였다.

困打開을 위한 政策樹立에 중요한 資料가 된다. 特別雇傭統計調査³⁰⁾ 結果에 의거하여 家口主의 經濟活動狀態를 살펴보았다. <表 9>에 나타나 있듯이 都市地域에서 貧困家口主의 31%가 經濟活動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失職이 13%로 가장 높고 다음에는 年老(9%), 家事(7%), 不具(4%)의 順이다.

<表 9> 家口主 經濟活動 狀態分布(%)

經濟活動狀態	都 市		農 村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일 하 였 음	64.9	86.5	80.2	91.8
일 하지 않았음	35.1	13.5	19.8	8.2
一時休職	1.0	0.6	0.7	0.4
失 職	12.5	2.8	3.0	0.5
家 事	6.7	3.6	2.9	1.8
通 學	1.5	1.4	0.2	0.2
年 老	9.0	3.8	9.0	4.1
不 具	3.7	0.9	3.4	1.0
기 타	0.6	0.4	0.6	0.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特別雇傭統計調査』, 1974.

<表 10> 家口主 就業從事上 地位別 分布(%)

就業從事上 地 位	都 市		農 村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雇 傭 主	1.4	6.2	0.5	2.5
零細自營業主	33.8	31.7	62.0	70.0
無給家族從事者	0.3	0.2	0.7	0.7
常用雇傭者	18.1	43.7	5.7	14.6
臨時雇傭者	11.3	6.6	5.3	3.0
日傭雇傭者	35.1	11.7	25.7	9.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特別雇傭統計調査』, 1974.

30) 統計局에서 1974년 11월에 全國的으로 약 13만 標本 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계소득과 경제활동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이 同時에 조사되었고 標本家口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家計所得이 家計調査나 國民所得統計에 비해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이를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그결과 全家口의 約 19%가 貧困家口로 推計되었 다.

經濟活動率이 都市地域에서 65%, 農村地域에서 80%로 貧困家口主의 대다수가 經濟活動을 하고 있다. 家口主 就業從事上 地位別 分布는 <表 10>에 나타나 있듯이 都市地域에서는 貧困家口主의 46%가 日傭 또는 臨時雇傭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零細自營業主로 34%를 차지한다. 農村地域에서는 貧困家口主의 62%가 零細自營業主이고 다음은 日傭 또는 臨時雇傭者가 31%를 차지한다. 家口主 職業別 分布는 <表 11>에 나타나 있듯이 都市地域 貧困家口主의 47%가 生産職에 종사하고 다음으로는 販賣職(19%), 農業(21%), 서어비스(7%)의 順이다. 農村地域은 貧困家口主의 77%가 農業에 종사하고 다음으로는 生産職(13%), 販賣職(7%)의 順이다.

<表 11> 家口主 職業別 分布(%)

職 業	都 市		農 村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專 門·技 術	1.3	6.9	0.5	3.2
行 政·管 理	0.3	1.6	0.1	0.3
事 務	3.9	14.1	1.0	4.8
販 賣	19.4	18.4	6.5	5.2
「서 어 비 스」	7.4	8.4	2.4	2.6
農 業·漁 業·林 業	20.6	13.3	76.7	72.9
生 産	47.0	37.3	12.8	11.1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特別雇傭統計調査』, 1974.

<表 12> 家口主 教育程度別 分布(%)

教育程度	都 市		農 村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貧 困 家 口	非貧困 家 口
不 就 學	25.5	11.5	41.7	30.5
國 民 學 校	41.7	28.3	44.9	42.2
中 學 校	17.5	20.0	8.9	12.1
高 等 學 校	12.8	26.4	3.9	11.2
大 學 校	2.5	13.9	0.6	3.9
合 計	100.0	100.0	100.0	100.0

資料：『特別雇傭統計調査』, 1974.

就業能力的 가장 큰 결정요인인 教育程度를 살펴보았다. 貧困家口主의 教育程度는 非貧困家口主의 경우보다 낮는데 이런 現狀은 특히 都市地域에서 심하다. <表 12>에 의하면 貧困家口主가 不就學한 경우가 都市에서 전체의 26%, 農村에서는 42%를 차지한다. 國民學校의 비율은 都市 42%, 農村 45%로 貧困家口主의 대부분이 國民學校 미만의 教育을 받았다.

3. 家口構成

家口構成面에서 貧困家口가 非貧困家口와 비교해서 다른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表 13>에 의하면 家口員數上으로 都市地域의 貧困家口는 4.8명으로 非貧困家口(4.7人)와 거의 비슷하다. 農村地域에서는 貧困家口의 家口員數가 5.0명으로 非貧困家口(5.2人)보다 약간 적다³¹⁾. 그러나 14세 미만 家口員比率面에서 貧困家口가 都市 42%, 農村 45%로 非貧困家口(都市 35%, 農村 38%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貧困家口는 家口主가 女性인 比率이 都市 22%, 農村 18%로 相對的으로 높다. 家口主 配偶關係面에서도 死別인 경우가 都市貧困家口의 16%, 農村貧困家口의 17%로 비교적 높다. 또한 家口主 年齡面에서 60세 이상의 경우가 貧困家口의 13%(都市), 18%(農村)로 相對的으로 높다. 이는 家口主가 老人이거나 남편을 死別한 女性일 경우 就業 능력의 장애

<表 13> 家口構成上의 特性

	都 市		農 村	
	貧困 家口	非貧困 家口	貧困 家口	非貧困 家口
1. 家口 家員 數(名) (14세 미만)	4.76 (2.02)	4.68 (1.63)	4.96 (2.23)	5.23 (1.99)
2. 家口 主 性 別(%)	100.0	100.0	100.0	100.0
男	78.4	87.4	81.6	90.9
女	21.6	12.6	18.4	9.1
3. 家口 主 配 偶 關 係(%)	100.0	100.0	100.0	100.0
未 婚	5.5	7.7	3.5	4.5
有 配 偶	76.7	83.2	78.5	86.4
死 別	16.0	8.0	16.7	8.5
기 타	1.8	1.1	1.3	0.6
4. 家口 主 年 齡 階 層(%)	100.0	100.0	100.0	100.0
19세 미만	2.4	1.8	0.9	0.7
20~44	58.1	64.3	49.9	52.0
45~59	26.9	26.6	31.1	33.4
60세 이상	12.6	7.3	18.0	13.9

資料：『特別雇傭統計調査』, 1974.

로 貧困의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V.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既存統計資料를 利用하여 韓國에서의 貧困人口를 推定하고 貧困家口의 特性을 分析하여 보았다. 分析에 使用된 統計資料의 缺陷, 分析方法을 選擇하는데 있어서의 任意性等을 고려하더라도 韓國의 貧困問題에 關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貧困線은 地域間的 價格隔差 때문에 地域에 따라 달리 推定되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이에 필요한 統計資料上의 제약으로 全國을 크게 都市와 農村으로 나누어 最低生計費를 推計하였다. 그 結果로 都市地域의 貧困線이

31) 保社部에서 추계한 生活保護對象家口의 平均家口員數는 1977년에 3.9人(身體障礙者 家口 2.1人, 極貧者 家口 4.6人)으로 全國平均家口員數 5.2人보다 낮다. 本稿의 推計가 이와 다른 이유는 特別雇傭統計調査에는 生保對象家口가 많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生保對相家口를 제외한 貧困家口의 家口員數는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農村地域보다 平均的으로 19% 높게 나타났다.

2) 貧困線은 家口員構成과 數에 따라 달리 推計되어야 한다. 本稿에서는 便宜上 5인으로 구성된 標準家口의 最低生計費를 推計함으로 家口員構成의 차이에서 오는 偏倚를 많이 除去하였고 家計消費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效果를 計量化하여 家口員數에 따라 貧困線을 따로 推計하였다.

3) 既存統計資料의 問題點들을 補完하여 얻어진 所得分配資料에 의거하여 貧困家口와 人口를 推計하였다. 貧困人口比率은 1960年代의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많은 減少를 보여 全國的으로 1965년에 41%에서 1970년에는 23%로 推計되었다. 이는 高度經濟成長을 통한 就業機會의 增大는 1960年代의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貧困을 打開하는데 가장 效果의 임을 示唆한다.

4) 1970年代에 들어서는 農村地域에서는 貧困人口가 계속 減少하였으나 都市地域에서는 오히려 增加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推計된 「센」의 貧困係數는 都市地域에서 1970년에 0.044에서 1976년에는 0.073으로 增加하였다. 이는 貧困人口比率이 점차 減少함에 따라 就業能力喪失者의 比重이 커 가는데도 基因하나이 期間中 所得不均等度가 높아졌다는 것도 도시지역에서 貧困의 深度가 높아진 큰 要因이라 하겠다. 따라서 1960年代에 효과적이었던 高度經濟成長政策만으로 앞으로 貧困打開을 이룩하기는 不充分하다고 생각된다.

5) 그 동안의 급격한 經濟發展으로 貧困人口比率이 減少하는 반면에 經濟規模는 크게 성장하여 貧困隔差(poverty gap)의 對 GNP

(또는 政府總支出) 比率은 크게 減少하였다. 이는 貧困打開을 위한 所得再分配政策도 점차 現實的 可能性이 있게 됨을 示唆한다.

6) 近來에 들어와 絕對貧困人口比率은 계속 減少하였으나 相對貧困人口比率은 所得分布의 不均等 때문에 增加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相對貧困이 絕對貧困에 못지않게 중요한 社會的 問題點으로 대두될 可能性이 높다 하겠다.

7) 貧困家口의 實際消費熱量은 平均的으로 必要量의 90% 이상이 되어 韓國에서의 貧困問題는 다른 後進國에서와 같이 生存을 위협하는 饑餓의 단계는 벗어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熱量 以外的 必要營養面에서 營養障礙症候 發現者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매우 未治한 상태이다. 또한 都市貧困家口의 대부분이 한 방에 居住하고 그나마도 傳貫나 月貫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生活의 質的인 면에서 貧困家口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8) 貧困家口主 就業狀態面에서 不具, 老齡 등의 이유로 就業能力喪失者(1974년에 都市 22%, 農村 16%)와 就業能力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就業을 못하는 失職者(1974년에 都市 14%, 農村 4%)도 많으나 이보다는 就業을 하면서도 貧困層에 속하는 家口가 더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日傭勞務者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에서의 貧困打開政策은 就業能力喪失者를 위한 公的扶助事業 이외에도 職業訓練 또는 效果的인 中小企業育成 등으로 低賃金解消를 위한 政策이 綜合的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9) 貧困家口는 家口主의 教育程度가 相對的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現狀은 都市地域에서 특히 심한데 이는 都市地域에서 教育程度가 賃金水準決定에 큰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貧困家口 子女들이 經濟的理由로 高等教育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므로 貧困의 世襲化傾向을 막기 위해서는 義務教育의 延長, 獎學金制度의 확충等으로 所得階層間 教育機會의 均等を 促進이 중요하다.

10) 家口構成面에서 貧困家口는 非貧困家口와 比較하여 큰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단지 家口主가 女性이나 老人일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의 就業能力障礙로 貧困의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既存資料의 分析을 통해 한국에서의 貧困의 대체적 輪廓을 糾明하여 보았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貧困打開政策의 設計를 위해서는 貧困의 深度와 貧困層의 社會·經濟의 特性을 分析하기 위한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는 統計資料의 定期的 蒐集이 필요함을 強調하고 싶다.

▷ 參 考 文 獻 ◁

國際聯合食糧農業機構(FAO)韓國協會, 『韓國人營養勸獎量』(第2改正版) 1977. 3.
 成均館大學校 勞動問題研究院, 「우리나라 最低賃金法制 및 經濟開發에 따른 賃金政策研究」, 1972. 12.
 全國纖維勞動組合, 「最低生計費」, 1969.
 鄭慶均, 「絕對貧困과 生活保護」, 1979. 1.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1979. 3.
 日本厚生省·社會福祉調査會, 『保護のてびき』 1978. 4.
 Ahluwalia, Montak S. "Rural Poverty in India: 1956/57 to 1973/74,"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279, May 1978.
 Anand, Sudir, "Inequality and Poverty in Malaysia: Measurement and Decomposition,"(unpublished), April 1978.
 Kim, Kwang Suk and Dai Young Kim, "The Effects of Household Size, Structure and Income on Expenditure Patterns," KDI Working Paper No.7510, May 1975.
 Mujahid, G.B.S. and D.A.S. Jackson. "The

Measurement of Poverty in Third World Countries: The "Case of Pakistan,"(unpublished), 1978.
 Orshansky, Mollie, "Counting the Poor: Another Look at the Poverty Profile," *Social Security Bulletin*, Jan. 1965.
 Rowntree, B.S. *Poverty: A Study of Town Life*, Macmillan, 1922.
 Sen, A.K. "Poverty: An Ordinal Approach of Measurement" *Econometrica*, Vol. 44, No.2, March 1976.
 Srinivasan, T.N. "Poverty: Some Measurement Problems," (unpublished), 1978.
 Statistics Canada, "Revision of Low Income Cut-Offs,"(unpublished), December 1973.
 Thomas, Vinod, "The Measurement of Spatial Differences in Poverty: The Case of Peru,"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73, January 1978.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The Measure of Poverty* (A Report to Congress), April 1976.

〈附表 1〉 1人 1日 最低飲食物費 項目別 推計(1973年)

	消費量 (g)	攝取熱量 (kcal)	飲食物費(원)		攝取蛋白質 (g)
			都 市	農 村	
곡 물	559.3	1,895.60	61.36	54.60	48.06
쌀	277.6	943.80	37.75	35.89	18.04
보 리 쌀	207.7	689.56	19.36	14.39	21.39
밀 가 루	72.8	257.71	4.11	4.21	8.15
콩	1.1	4.43	0.15	0.12	0.46
육 류·유 란	5.9	7.40	3.24	2.98	1.02
쇠 고 기	1.0	1.34	1.13	1.06	0.20
돼 지 고 기	1.9	2.38	1.10	1.02	0.39
닭 고 기	1.2	1.56	0.48	0.39	0.26
달걀	1.5	2.01	0.46	0.44	0.16
우 유	0.3	0.15	0.06	0.06	0.01
어 류·해 초	19.9	19.04	3.76	2.30	2.86
갈 치	8.1	9.39	1.57	0.54	1.13
생 명 태	5.5	2.45	0.68	0.68	0.45
조 기	0.5	0.26	0.18	0.19	0.05
고 등 어	4.1	3.12	0.57	0.46	0.50
콩 치	0.5	0.52	0.06	0.04	0.08
마 른 멸 치	1.0	2.82	0.54	0.28	0.63
미 역	0.2	0.48	0.16	0.11	0.02
채소·감자류	334.6	90.27	12.80	7.81	4.83
배 추	207.8	34.41	6.82	4.66	2.49
파	9.4	4.06	0.37	0.30	0.21
시 금 치	1.0	0.33	0.06	0.05	0.03
콩 나 물	7.3	2.68	0.51	0.51	0.30
무 우	71.2	20.98	2.26	1.31	1.35
감 자	3.9	2.61	0.44	0.29	0.09
고 구 마	9.8	11.87	0.25	0.15	0.10
호 박	24.2	13.33	2.10	0.54	0.27
과 일	10.4	4.68	1.53	0.81	0.03
사 과	7.8	3.65	1.26	0.60	0.02
배	2.6	1.03	0.27	0.20	0.01
조 미 료	37.4	30.48	7.06	6.36	0.85
고 추 가	2.1	1.13	1.40	1.26	0.05
고 추 가	2.7	7.91	2.16	1.95	0.29
마 소 늘금	5.1	6.58	1.25	0.82	0.14
마 소	20.1	—	0.49	0.58	—
간 추 장	2.6	0.73	0.32	0.33	0.11
고 추 장	2.8	5.00	0.72	0.72	0.25
설 참 탕	1.6	6.42	0.32	0.33	—
설 참 기	0.3	2.71	0.39	0.37	—
가 공 식 품	17.8	52.49	1.52	1.65	1.71
국 수	14.3	46.71	1.04	1.15	1.40
라 면	0.7	3.23	0.13	0.15	0.07
두 부	2.8	2.55	0.34	0.34	0.24
합	985.3	2,100.00	91.27	76.51	59.36

〈附表 2〉 「영질」函數推定(1963~77年)

(1973年 不變價格)¹⁾

	都市家計調査(원/年)				農家經濟調査(원/年)			
	α	β	(β 의 표준 오차)	R^2	α	β	(β 의 표준 오차)	R^2
(1) $\frac{C_i}{N} = \alpha + \beta \frac{Y}{N}$								
飲食物費	1,977.79	0.1456	(0.0208)	0.790	1,209.18	0.1650	(0.0240)	0.784
住居費	-599.01	0.2452	(0.0153)	0.952	-190.09	0.0775	(0.0060)	0.928
光熱費	62.32	0.0383	(0.0029)	0.933	112.64	0.0332	(0.0039)	0.850
被服費	-230.74	0.1168	(0.0066)	0.960	62.45	0.0424	(0.0045)	0.872
雜費	-267.81	0.1553	(0.0080)	0.967	221.43	0.0558	(0.0137)	0.561
(2) $\frac{C_i}{N} = \alpha + \beta \ln\left(\frac{Y}{N}\right)$								
飲食物費	-5,469.7	961.8	(136.8)	0.792	-5,515.3	890.8	(146.3)	0.741
住居費	-12,461.3	1,542.9	(169.2)	0.865	-3,338.6	417.2	(44.4)	0.872
光熱費	-1,862.9	249.2	(22.3)	0.906	-1,259.2	181.4	(23.3)	0.823
被服費	-6,198.1	770.8	(43.9)	0.960	-1,733.2	236.8	(24.1)	0.881
雜費	-8,079.1	1,010.9	(70.0)	0.941	-2,069.1	303.1	(78.0)	0.537
(3) $\ln\left(\frac{C_i}{N}\right) = \alpha + \beta \ln\left(\frac{Y}{N}\right)$								
飲食物費	5,120.2	0.3270	(0.0434)	0.815	4,1286	0.4107	(0.0704)	0.725
住居費	-6,194.1	1.4882	(0.0661)	0.975	-9,3304	1.7099	(0.1149)	0.945
光熱費	-1,176.5	0.7887	(0.0554)	0.940	0,5233	0.6005	(0.0715)	0.845
被服費	-7,937.1	1.6112	(0.0955)	0.956	-1,2918	0.8109	(0.0913)	0.859
雜費	-5,847.0	1.4147	(0.0782)	0.962	1,1717	0.5914	(0.1720)	0.477

註：1) 「디플레이터」로 都市家計調査는 統計局의 消費者物價指數, 農家經濟調査는 農協의 農家購入價格指數를 使用하였음.